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19-97
----------	-------

발의년월일 : 2019. 7. .

발의자 :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신종갑

## 1. 제안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안 제5조)
- 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 등(안 제6조)
- 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바. 비밀엄수의무 등(안 제13조)

## 3. 관계법령

-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9. 7. 16 . ~ 7. 2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회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회의 기능)** 협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협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를 대표하고, 협회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5조(지원의 범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나.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구자체 예산편성에 따른 자체사업계획 없음.

4. 작성자 : 안정행정국 자치행정과 정민영 (☎8306)